

26. 宅地超過所有負擔金 賦課率 上向

資料提供：建設部

- 토지공개념제도의 일환으로 도입·시행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난 92. 3. 2일부터
 - 서울·부산등 6대도시의 택지를 소유한법인과 가구당 소유상한 200평을 초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매년 6.1일을 기준으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하고 있음.
- 그러나 부과율은 동법에서 92. 3. 2일부터 2년간은 낮은 부과율을 적용하고 그이후부터는 높은 부과율을 적용하되 택지의 종류에 따라 다른부과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금년 3.2부터는
 - 주택부속토지는 공시지가의 4%에서 7%로
 - 나대지는 공시지가의 6%에서 11%로 부과율이 올라가게 됨
- 이와같이 부과율을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제도시행초기는 새로운 부담금부과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장기간 택지를 처분하거나 이용·개발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택지의 공급과 고른소유를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도입 취지때문임
- 지금까지 부담금은 2번 부과되었는 바 92년도에는 3개월분(92. 3. 2~6. 1)1444억원, 93년도에는 1년분(92. 6. 2~93. 6. 1)으로 3,906억원이 부과되었음

모이면 질서있게, 끝날때 깨끗하게